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09
------------	------

2017. 2. 2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7년 2월 7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7.2.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 가.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지속적·안정적인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목적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도시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4조)
 - 도시재생기금의 조성 재원과 사용 용도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도시재생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도시재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도시재생기금 설치에 따라 함께 개정되어야 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의 개정」에 관하여 규정함(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 완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사항 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주택건축국 협의 완료
-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16. 12. 19. ~ 2017. 1. 4.) 결과: 별도 붙임
 - (2)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4.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배경 및 구성

-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방안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2017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기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에서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한 바¹⁾,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며,
- 조례안의 구성은 기금의 목적 및 존속기한(안 제1조~제4조), 기금의 재원 및 용도(안 제5조~제6조), 기금의 관리·운영(안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8조~제12조) 등 총 1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은, 서울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²⁾(붙임1) 등으로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을 조성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사용하고, 도시재생본부가 기금을 관리·운영하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등의 심의를 하도록 하며, 기금 존속기한은 2022년(2018~2022, 5년)까지 설정함³⁾.
- 기금 재원은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사업특별회계⁴⁾ 재정비축진사업계정(이하, 재축계정)의 세입 중에서 과밀부담금을 기금 재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임.

1)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서울시귀속분)의 50%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이고, 나머지 50%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축계정 세입으로 각각 250억원 정도의 규모임

3)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12.31.까지 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됨에 따른 것이며, 2017년 기금 조성 준비를 하고 2018년부터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4)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사업계정(이하, 국민계정),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이하, 도정계정), 재정비축진사업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연평균 1,114억원 소요가 추정되는(붙임2) 반면 기금은 270억원(과밀부담금 23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40억원) 규모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중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⁵⁾을 대상으로 기금을 선별 사용하고 나머지 사업비(연평균 830억원)는 현행과 같이 일반회계·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집행할 계획임.

□ 주요 검토사항

“예산과 기금의 이해”

- 서울시 재정은 일반회계와 10개의 특별회계, 15개의 기금으로 구성됨.

(단위: 백만원)

		2017	2016	2015
총계		32,015,393 (100%)	31,591,413 (100%)	28,670,502 (100%)
일반회계		20,639,809 (64%)	20,984,104 (66%)	19,014,868 (66%)
특별회계	규모	9,161,308 (29%)	8,838,272 (28%)	7,498,910 (26%)
	개수	10개 ⁶⁾	12개	12개
기금	규모	2,214,276 (7%)	1,769,037 (6%)	2,156,724 (8%)
	개수	15개 ⁷⁾ (21개 계정)	14개(20개 계정)	14개(20개 계정)

- 일반회계는 주로 지방세 세입으로 일반지출을 수행하는 서울시 재정운영의 기본회계이고, 특별회계⁸⁾는 사업수입, 목적세·수수료·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특정한 사업 또는 자금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한 세입과 세출을 직접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며, 기금은 출연금·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되어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함.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크게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되는 가운데, 근린재생형 자본적 경비(연평균 623억원)를 대상으로 기금을 선별 사용할 계획임(붙임2)

6)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소방안전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16년 대비 '17년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제외됨)

7) 재정투융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기후변화기금, 사회투자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성평등기금,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체육진흥기금, 감채기금,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지역개발기금('16년 대비 '17년에 지역개발기금이 신설됨)

8) 특별회계는 치열한 분야별 예산 확보 다툼으로 일부 필수분야 사업이 경쟁에서 밀려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재정간막이 설치를 통해 필수분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제도임. 즉,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 안정적으로 당해 연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별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회계와 달리 재원의 조성방법과 재원의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임. 특별회계의 재원은 특정 세입(일부 또는 전부)과 일반회계(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이루어짐에 반해 일반회계는 모든 세입과 각종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함. 그리고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해서 지출을 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는 모든 재정사업에 지출할 수 있음.

- 특정분야의 사업에 다년간에 걸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지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회계와 기금 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⁹⁾, 특별회계는 사업별 세부내용을 토대로 의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가 이루어져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예산 통제가 용이하다 할 수 있으나,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 변경은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¹⁰⁾ 등 기금이 운용상 자율성, 집행의 탄력성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음(붙임3)¹¹⁾.

“기금 설치의 배경”

- 도시재생(사업)의 모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규정이 있음에도¹²⁾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을 설치코자 하는 것은 서울시 관련부서 간에 도시재생특별회계 재원 마련에 합의되지 않으면서¹³⁾, 대신 최소한의 규모로 기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된 데 주로 기인함.

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유사한 특별회계와 기금은 중복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11) 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 세입세출 혼동금지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합법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기금은 이러한 원칙의 예외적인 적용을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음. 수입과 지출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예산은 법령에 의하여 배정·이용·전용·이체 등에 있어 합법성에 대한 통제를 받는데 비하여, 기금은 합목적성 차원에서 재량과 탄력성의 여지가 크게 인정됨(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등 탄력적 예산집행이 요구되는 경우 기금 형태의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음)
 12)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13) 당초 주택사업특별회계 중 국민계정만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남기고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재생계정(재촉계정 흡수)과 도정계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예산담당관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도정계정과 국민계정으로 운영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를 단일계정(재촉계정 흡수)으로 운영하되 재촉계정에서 국민계정으로의 전출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도정계정·재촉계정의 국민계정으로의 전출금은 폐지하되 재투기금회수금을 국민계정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함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계정 세입	재촉계정 세입
1. 재산세 2. 개발부담금 3. 재건축부담금 4. 과밀부담금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차입금 8. 용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1. 재산세 2. 재건축부담금 3. 국고보조금·용자금 4. 용자금의 상환원리금 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7. 재투기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 8. 무상양도토지 처분수입금 9. 그 밖의 정비사업 관련 수입금 10.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1. 개발부담금 12. 청산징수금 13. 양여토지 처분수입금 14. 국·공유지 매각대금	1. 재산세 2. 재건축부담금 3. 정부의 보조금 및 차입금 4. 용자 회수금, 이자·기타 수익금 5. 일반회계 전입금 6.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7. 과밀부담금

* 자료 :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주세입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재촉계정의 주세입원이 유사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재원이 새롭게 마련되기 어렵고,
- 임대주택 8만호 건설('14~'18, 붙임4)을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재촉계정으로 부터 국민계정으로 전출금 규모가 큰 상황에서 도시재생특별회계 신설이 전출금을 축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합의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됨.

<주택사업특별회계 각 계정간 전출입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국민계정	전입	1,246,545	470,534	325,600	266,838	183,573
	전출					
도정계정	전입					
	전출	546,189	345,639	76,868	61,734	61,948
재촉계정	전입					
	전출	700,356	124,895	248,732	205,104	121,625

* 자료 :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결과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촉계정의 세입 일부(과밀부담금)를 주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되, 재촉계정의 재원이 축소되는 만큼 도정사업 세출을 축소하여, 재촉사업 세출규모와 재촉·도정계정으로부터 국민계정으로의 전출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주민참여가 중요한 도시재생의 특성상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계획·사업의 유연성이 높게 요구됨에 따라, 단년도 예산 체계보다는 여유자금 적립이 가능하고¹⁴⁾

14)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 단년도 기준으로 운용되는 예산과 달리 기금은 일정시점의 재산상태인 「조성」과 1년의 운영상황인 「운용」으로 나뉘어 운용의 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조성의 재원으로 적립

기반시설 확충,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예산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에 비해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관리감독이 약한 기금으로 도시재생(사업) 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즉, 서울시의 현 실정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기금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재구조화와 병행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주세입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재촉계정) 주세입원이 유사함에도, 현행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도정계정과 재촉계정은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정비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촉법)의 재촉사업을 재원투입의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은 물론 정비구역이나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경우의 대안적 도시재생사업에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할 근거가 미흡함¹⁶⁾.

이와 같이, 정책·시장과 제도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적지 않고¹⁷⁾ 동일 사업의 회계가 변경되는¹⁸⁾ 등 실정에 맞지 않는 특별회계 운영으로 회계 질서의 혼선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재구조화를 통해 시대적·정책적 요구에 맞추어 해당 세입을 정비사업·재촉사업 외에 도시재생(사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세출근거 마련이 필요함.

- 특히, '15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현황을 보면, 재촉계정 2,366억원 중 87%(2,051억원)는 국민계정으로 진출하고 나머지 13%(315억원)만 촉진사업 등에 집행하였는데, 이는 재촉계정 운영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재촉사업 확대는 기대하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차.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카.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6)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각 계정이 설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비사업이나 재정비촉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지만, 정비사업이나 재정비촉진사업 외의 도시재생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사업이 아님
 17)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 중 17건, 364억 25백만원이 설치 목적 외의 사업에 투입되고 있음('16.8. 서울시 예산·재정분석,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18) 도시재생본부 최근 2년 회계간 이동사업을 보면, '낙원상가·돈화문로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 → 주택사업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회계간 이동이 되어, 회계간 질서 회복을 위해서라도 도시재생사업 예산 출처의 명료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붙임5).

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재촉계정 존치여부를 포함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¹⁹⁾.

<'15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현황, 자료: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구분	국민계정	도정계정	재촉계정
'15 예산	3,961억원	7,079억원	2,366억원
세입	도정·재촉 전입 2,665 임대사업수입 127 국고보조 등 1,169	재산세 1,040 임대수입·보조금 2,190 재·투기금 회수 1,662 국공유지 매각 528 국민주택기금 차입 1,004 기 타 655	재산세 1,040 과밀부담금 250 재·투기금 회수 885 기 타 191
세출	임대매입·관리 3,831 차입금상환 104 기 타 26	임대매입·관리 5,214 국민계정 전출 614 정비사업 261 도시재생사업 554 차입금상환 379 기 타 57	국민계정 전출 2,051 촉진사업 255 도시재생사업 40 기 타 20
채권		재·투예탁금 4,698	재·투예탁금 2,332
채무	재·투기금 차입 1,836	국민주택기금 차입 6,138	

즉, 사업비 규모보다 전출금 규모가 훨씬 크고 재정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재촉계정은 폐지하되 해당 세입을 활용하여²⁰⁾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

19) 재촉계정의 설치 근거인 재촉법 제24조는 특별회계의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없애도 '16년도 재촉계정 목적 사업 규모 정도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으므로 재촉계정은 존치 여부를 포함하여 재촉계정의 설치 효과 제고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재촉계정의 세입 축소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세입은 재촉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상황임('16.8. 서울시 예산·재정분석, 예산정책담당관)

20) 재촉계정의 주요 세입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해 도정계정, 재촉계정, 주차장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국한되는데, 특별법과 연계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일부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별법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②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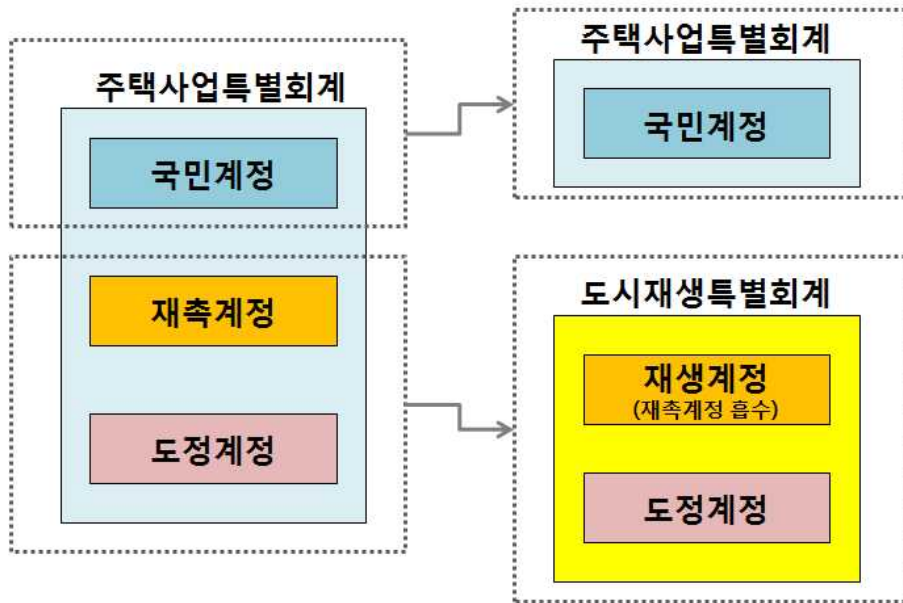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9.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8조(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법 제60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며, 국민계정만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운용하고 도정계정과 재생계정을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등 주택사업특별회계 재구조화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회계 간의²¹⁾ 지속적인 진출·전입을 금하고 있음에도²²⁾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위해 '13년부터 연속적으로 도정·재촉계정으로부터 국민계정으로 막대한 규모의 진출이 이루어져 왔는데, 8만호 건설 이후 이러한 왜곡된 재정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택사업특별회계 재구조화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신설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즉, 단기적으로는 기금을 운용하되 기금의 존속기한을 최대한 축소하여, 임대주택 8만호 건설 완료 시점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재구조화 등을 추진하여 270억원 규모의 기금을 실제 비용 규모에 근접한(현실재원 1,000억원 이상)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음.

○ 참고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집행 탄력성 요구는, 특별회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 21)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 계정은 주택법(국민계정), 도정법(도정계정), 재촉법(재촉계정) 등 각기 설치 근거가 달라 사실상 각각 다른 특별회계임. 당초 국민계정만으로 구성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 후 시차를 두고 추가로 개별 계정의 설치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었는데 이를 편의상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각 계정의 성격은 명확히 다른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음
- 22) 행정안전부가 2011.3월 발간한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 상 다른 회계로의 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당해 특별회계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할 것이라 답변하고 있고, '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의 별표 14에 따르면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에서 '수년간에 걸쳐 특정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으로 기술되어 있어('16.8. 서울시 예산·재정분석, 예산정책담당관), 회계 간 진출입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 수년 간 지속적인 진출입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겠음

계의 여유자금 예탁²³⁾과 계속비계약·증장기계약²⁴⁾ 등을 통해 다년도 사업 수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용도의 적절성”

- 도시재생 사업비(1천여억원)의 25% 수준(270억원)의 기금 설치는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도 기금을 선별 사용함을 전제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부는 기금사업으로, 나머지는 예산사업으로 집행코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경우, 기금사업의 성격·유형·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에서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이 행정 편의적으로 혼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연간 1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기금을 조성하면서 그 용도를 광범위하게 설정한다면, 기금을 사유로 도시재생의 예산사업 편성에 저항이 있는 등 오히려 기금이 도시재생 재원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 기금사업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이 확실한 차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즉, 이 조례안에는 다소 광범위하게 기금 용도를 나열하고, 주민공모, 거점시설 매입·조성 관련사업 등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기금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도 집행의 유일성·탄력성이 높게 요구되는 거점시설 매입·조성에 국한하

23) 도시재생본부 신설 이후 ‘15~’17(잠정) 재정상황 분석결과, ‘15년에는 소규모(10억~20억) 예산사업 비중이 가장 높았고, 도시재생 2년차, 3년차로 접어들수록 중·소규모 예산사업 비중은 감소한 반면 ‘17년에는 대규모(100억 이상) 예산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기금을 통하여 사업 초기에는 여유자금을 적립하였다가 향후 사업비 규모가 커질 때 적립된 여유자금을 사용코자 함. 그러나, 기금이 아니더라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도정계정과 재정계정에서 잉여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사례와 같이,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 예탁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붙임6)

24) 특정분야 사업을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고, 개별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비계약 및 증장기계약 제도가 있음(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은 모두 입찰시 사업비 총액으로 입찰하지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실제 계약금액은 연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총 사업기간 중 매년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반면, 계속비계약은 계약시에도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음)

* 예산은 단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편성·집행되지만 계속비계약 등의 경우 여러 해에 걸쳐 사업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음

지방계약법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2.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하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는²⁵⁾ 등 그 용도를 보다 명확히 하여, 기금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재생(사업)은 당연 예산사업으로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 집행부의 운용 재량이 큰 기금의 경우, 목적사업 여부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기금 사용의 견제·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조례안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기금관리부서의 부서장과 국장이며, 부서 내부적으로 기금관리부서 공무원 4명, 시의원 2명, 민간전문가 4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기금을 심의하는 중심주체가 되는 구조적 모순을 발생시키므로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금 운용의 여러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기금관리부서장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더라도²⁶⁾,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늘려 기금운용주체의 의사결정에 민간위원이 거수기 역할에 그치지 않고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기금 운용시 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되면서 위원회 심의가 절차 이행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대면심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 심의가 요식행위가 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종 합

-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재원 마련에 서울시 관련부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대신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축계정의 세입 일부(과밀부담금)를 주재원으로 기금을 조성코자 제출됨.
- 서울시 현 실정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기금(270억원)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재개발·뉴타운 등이 도시재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개발에 집중되어 있는 현행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이와 병행하여 현실적 재원규모(1천억원 이상)의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금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도 집행의 유일성·탄력성이 높게 요구되는 거점시설 매입·조성에 국한하는 등 그 용도를 보다 명확히 하여, 포괄적 개념의 도

25)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공모사업, 공동이용시설 등 거점시설 조성, 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운데, 주민역량강화·공모사업 등은 비교적 작은 지출규모를 보이는 반면 거점시설 조성, 기반시설 확충 등은 지출규모가 큼. 하수관 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집행규모를 분담할 수 있으나, 거점시설 조성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한 도시재생본부가 거의 전담하게 됨

26) 15개 기금 중 3개 기금만 위원장이 민간위원임(사회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시재생에서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이 확실한 차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예산에 비해 집행부의 운용 재량이 큰 기금의 경우, 기금 사용의 견제·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주체가 기금 심의의 중심주체가 되는 구조적 모순을 지양하고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위원의 확대 및 대면심의 원칙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09
----------	---------

제안일자 : 2017. 2. 21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단기적으로는 기금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재개발·뉴타운 해제구역 등이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개발 정비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현행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구조화와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축소하고, 기금사업의 용도를 보다 명확히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2. 수정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안 제4조),
- 기금의 용도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관리 비용,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비 등으로 하며(안 제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안 제9조),
- 회의 출석을 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안 제12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2022년”을 “2021년”으로 하고, 안 제4조제1항을 안 제4조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관리 비용
3.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비
4. 도시재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차입금 및 이자 상환
6.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7.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안 제9조제1항 중 “10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도시재생본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안 제12조제4항 각 호의 부분 본문 중 “출석으로”를 “출석(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으로”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u>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u>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u>제6조(기금의 용도) ①</u>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관리 비용 4.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5. 도시재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7.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8.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9.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비용 1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비 1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행하는 주민역량강화 사업비 13. 차입금 및 이자 상환 14.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1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p><u>②</u>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제1항의 용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공모, 거점시설 매입·조성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협의와 참여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사업 2.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급증이 예상되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사업 3. 기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p><u>제4조(기금의 존속기한)</u> ----- --- 2021년 -----.</p> <p><u>제6조(기금의 용도)</u>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관리 비용 3.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비 4. 도시재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차입금 및 이자 상환 6.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7.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재생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생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생략)

③ ~ ④ (생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생략)

⑤ ~ ⑧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 11명 -----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도시재생본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1.~3. (제정안과 같음)

③ ~ ④ (제정안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 출석(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으로 -----

1.~3. (제정안과 같음)

⑤ ~ ⑧ (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시의 재생을 지원·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제1호의 도시재생을 위한 활동 중에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의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2.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차입금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출연금
6.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관리 비용
3.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비
4. 도시재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차입금 및 이자 상환
6.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7.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

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도시재생본부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재생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 재생정책과 기금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도시재생본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기금의 운용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기금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해충돌 상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위원에 대하여는 소명절차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매년 두 번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3. 제10조에 따라 일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된 경우의 당해 심의

⑤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도시재생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 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의 설치·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으로 통합·운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법 제24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를 말한다.